

金星煥	李天揆	李鍾萬
李奉衡	具又石	韓賢應
金鍾烈	沈載昶	孫龍浩
洪性煥	俞南烈	金汶泰
李宗一	鄭然宇	李康泌
尹東鉉	洪吉杓	田炳萬
李仁求	尹正鏞	金裕顯
尹明奎	權五範	

○出席公務員

區廳長	李慶培
副區廳長	潘尙均
財務局長	朴贊守
都市整備局長	申水木
建設局長	姜昌求
保健所長	孟時仙
總務課長	金石鳳
企劃豫算課長	金鎮澤

(參照)

결산검사위원선임(안)

발의년월일 : '93. 4. 2.  
발 의 자 : 김성환의원  
의 6인

○ 주 문

- 결산검사위원수 : 의원 3인
-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
○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'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○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5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

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  
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(안)  
심 사 보 고 서

'93. 4. 8.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3. 3. 31.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'93. 3. 31.

다. 상정일자 : 제15회임시회 제1차위원회('93. 4. 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김진택)

가. 제안이유

○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('90. 5. 3. 대통령령 제12999호)와 관련,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○ 1990. 5. 3. 대통령령 제12999호로 공포된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여 법적 상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  
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3. 3. 3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 
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('90. 5. 3. 대통령령 제12999호)와 관련,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